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회)	

국유재산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기획재정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정부출자기업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정부가 「국유재산법」에 따라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는바,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공급 등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 정부가 현물출자를 통해 자본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포함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에 「주택도시기금법」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포함(안 별표1 제32호 신설)
- 나.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에 「주택도시기금법」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외(안 별표2 제5호 삭제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에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2. 「주택도시기금법」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
별표 2 제5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[별표1]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 (제2조 관련) 1.~31. (생략) <신설> [별표2]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(제67 의2 관련) 1.~4. (생략) 5. 「주택도시기금법」에 따른 주 택도시보증공사 6.~9. (생략)	[별표1]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 (제2조 관련) 1.~31. (현행과 같음) 32. <u>「주택도시기금법」에 따른</u> <u>주택도시보증공사</u> 1.~4.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 6.~9.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연 락 처	(044) 215 - 5172